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3.02.08] (일부개정) 2023.02.08 조례 제1987호

> 관리책임부서명 : 주민복지과 관리책임전화번호 : 061-797-2312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가보훈기본법」등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광양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"희생·공헌자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가.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
- 나.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
- 다.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
- 라.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등 공무수행
- 2."국가보훈대상자"란 희생·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 을 말한다.
- 3."국가보훈 관계법령"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.

제3조(예우 및 지원 대상)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 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(이하 "보훈단체"라 한다)로 한다. <개정 2017. 12. 27.>

제4조(책무) ①모든 광양시민은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광양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②광양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노력 하여야 한다.

- 1.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
- 2.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하여는 의전상의 예우 실시
- 3.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출신 희생·공헌자의 공적 기재
- 4.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출신 희생·공헌자의 공적 소개
- 5. 보훈 대상자·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와 모범 보훈가족 포상
- 6.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행재정적 지원
- 7.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공공시설물에 희생·공헌자의 이름이나 보훈명칭 부여
- 8. 그 밖에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가리는 사업 <개정 2023. 2. 8.>

제6조(보훈단체의 지원) 시장은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.

- 1.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재정
- 2. 호국·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·전적지 등 순례 경비
- 3.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

제7조(복지 지원 등)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1. 광양시가 설치·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·주차료 감면
- 2. 생존 애국지사의 위문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조문
- 3. 광양시가 설립·관리하는 공영 진료기관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
- 4. 국가유공자 자녀의 취업 배려

제8조(보훈명예수당 지급 등) ①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한다. <개정 2017. 12. 27, 2023. 2 8.>

- 1.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: 월 150,000원 <개정 2012.11.21,2014.1.8,2017.12.27., 2023. 2. 8.>
- 2.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의료비 수당 : 월 30,000원 <개정 2023. 2. 8.>
- 3.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: 300,000원 <개정 2017. 12. 27., 2023. 2. 8.>
- ②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, 「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」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 및 관계기관에서는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한다. <개정 2023. 2. 8.>

제9조(지급 방법 등) ① 제8조제1항의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수당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, 12, 27,, 2023, 2, 8,>

- 1.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: 별지 제1호서식 <개정 2023. 2. 8.>
- 2.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의료비 수당 : 별지 제1호서식 <개정 2023. 2. 8.>
- 3.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: 별지 제2호서식 <개정 2023. 2. 8.>
- ② 제1항제3호의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가족 또는 관계인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. < 개정 2023. 2. 8.>
-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,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개정 2017. 12. 27., 2023. 2. 8.>
- ④ 제1항의 수당 지급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10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. <개정 2023. 2. 8.>

제10조(지급 중지의 결정 등) ①수당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. <개정 2023. 2. 8.>

- 1. 사망한 경우
- 2. 다른 시·군·구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
- 3.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
- ② 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2. 8.>

제11조(환수 조치)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.<개정 2017. 12. 27.>

- 1.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
- 2. 수당을 받은후 그 수당을 받게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
- 3. 잘못 지급된 경우

제12조(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)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개정 2010.11.24. 조례 제1039호)

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개정 2012.11.21 조례 1168호)

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개정 2014.1.8 조례 제1243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<개정 2017. 12. 27. 조례 제1555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조례 제1987호, 개정 2023. 2. 8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